

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1. 12. 30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 27)상정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채무국장 유 의 재)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되므로 관련조문정비

나. 주요골자

○ 면제대상세목에 소방공동시설세 추가

○ 단서조항에 정당한사유없이 주차장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하겠다는 뜻을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민귀식)

- 도시지역의 주차난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설치자가 설치의무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노천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 1991년 12월 14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에 의하여 시·군의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전용시설용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것으로 법령의 내용과 일치토록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없음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7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